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1. 실증특례 지정사실 (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023.12.01.~2025.12.01.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도심지 건물내 일정 공간·시설을 이용자에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대여해주고, 관리하는 서비스

2. 이용자 유의사항

- 부가조건:

< 부가 조건 >

1. 안전 등을 위해 물품 보관·적재에 따른 구조·안전, 피난·방화 문제 측면에서 검토 대책 마련
2.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

3. 이용자 보호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 재산종합보험(재고자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지정번호	2023-18호	지정연월일	2023년 9월 27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세컨신드롬	사업자(법인)등록번호	676-87-00400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17, 2층		
	대표자 홍우태		
지정 대상 기술·서비스	명칭 및 주요내용 (명칭)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주요내용) 도심지 건물내 일정 공간·시설을 이용자에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대여해주고, 관리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지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례내용) 세컨신드롬이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규제특례 지정(조건) 붙임의 '부가조건'을 준수할 것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